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9월분)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예고> 식품원료 올리브 과실 추출 잔여물 (하이드록시티로졸 함유)의 사용제한 및 표기법 초안 제정** (「食品原料『油橄欖果實渣萃取物(含羥基酪醇)』之使用限制及其標示」草案)

○ **공고 기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 **공고 일자 :** 2018년 9월 25일

○ **근거 법규 :** 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1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 **공고 번호 :** 衛授食字第1071302009號

○ **공고 내용**

1. 본 규정의 법적 근거
2. 원료유 올리브 과실의 추출 잔여물(하이드록시티로졸 함유)의 사용 제한, 제조방식, 하이드록시티로졸의 함량 및 1일 섭취량 규정
3. 올리브 과실 추출 잔여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 시 이에 대한 제품 외포장 경고문 표기 규정

<올리브 과실 추출 잔여물 (하이드록시티로졸 함유)의 사용제한 및 표기 초안>

관련 규정	규정 설명
1. 본 규정은 식품안전 위생 관리법 제15조-1, 제2항(項) 및 제 22조 제1항(項) 제10항(款) 규정에 의해 지정함	본 규정의 법적 근거
2. 올리브 과실 추출 잔여물(하이드록시티로졸 함유)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1) 올리브 과실 추출 잔여물 제조방법은 뜨거운 물에 추출해야 하며, 원심기, 농축, 살균 및 탈수 건조 등 가공 절차를 거쳐야 함 (2) 제품에 하이드록시티로졸 성분 함량은 15%~40% 제한 (3) 하이드록시티로졸 하루 섭취 사용량은 20mg 이하 제정	올리브 과실 추출 잔여물 (하이드록시티로졸) 성분의 사용제한, 제조방법, 함량 및 1일 섭취 제한량
3. 올리브 과실 추출 잔여물(하이드록시티로졸 함유)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시에는 제품 외포장에 [임산부 및 영유아가 복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란 문구를 기재해야 함	올리브 과실 추출물 잔여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 시 이에 대한 제품 외포장 경고문 표기 규정

- 올리브 과실(油橄欖果實)을 압착하면 올리브 오일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추출 후 남은 잔여물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최근에는 압착 후 남은 올리브 추출 잔여물에서 항산화물질 하이드록시티로졸(hydroxytyrosol)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밝혀져 관련 업자들은 해당 성분을 추출하여 보건식품으로 재가공하여 사용하기도 함. 현재 미국 및 뉴질랜드 국가에서는 이러한 하이드록시티로졸(hydroxytyrosol)이 함유된 보건식품이 유통되고 있음

- 2016년 대만 관련 업체는 올리브 과실 추출 잔여물을 [비전통성 식품원료 非傳統性的食品原料]로 등록 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은 금년 2018년에 정식으로 승인이 되었으나 대만 시중에는 아직 [하이드록시티로졸(hydroxytyrosol)]성분의 건강식품은 출시되지 않았음

- 해외문헌 및 연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장기간 하이드록시티로졸(hydroxytyrosol)을 식용한 동물은 배태 시 체중이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만 식품약물 관리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해당원료에 대한 경고문 및 사용제한을 규정하였고, 제품 외포장에 [임산부 및 영유아가 복용하기에는 부적절함]이란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고 발표 함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에서는 제품에 하이드록시티로졸(hydroxytyrosol)성분이 함유 되었을 경우 해당성분은 15%~40%의 함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하루 복용량은 20mg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정함

<시사점>

- 신규 승인된 원료가 발표되면서 대만식약서에서는 해당원료의 사용제도를 대만 내 별도의 사용 규정 및 라벨링 표기법을 제정할 예정이므로, 해당 원료가 첨가된 식품을 對대만으로 수출 시 관련 제도의 주의가 필요 함

* 자료원 : 대만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2018.9.25 공고 / 연합보 2018.9.25.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공고> [동물 및 동물산품 검역 조건(動物及動物產品輸入檢疫條件)]

○ **공고 기관 :** 대만 행정원농업위원회 (行政院農業委員會)

○ **공고 및 시행일자 :** 2018년 7월 30일 / 2018년 9월 1일

○ **공고 내용**

1. 2018년 9월 1일부터 대만에서 운송한 활(活)갑각류 및 연체동물은 동물 및 동물산품의 수입 검역 조건에 부합해야 함
2. 활(活)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수입 검역 조건 규정
   활(活)갑각류 및 연체동물을 수입할 때 검역해야 할 종류 및 지정한 검역 범위는 <붙임 1>과 <붙임 2>를 참조
3. 본 검역 조건에서 정한 표본 샘플링, 검사, 감측은 세계 동물위생조직의 '수생동물질병 진단수첩(Manual of Diagnostic Tests for Aquatic Animals)' 을 따르고 진단수첩에 지정되지 않은 샘플링, 검사, 감측방법은 국제과학 정기간행물에 발표한 방법의 것으로 함. 본 검역조건에서 정한 잠복기는 진단수첩이나 세계동물위생조직의 '수생동물 보건법(Aquatic Animal Health Code)' 기준으로 하되 진단수첩, 보건법, 국제과학 정기 간행물이나 발표 자료에 기록되지 상황이라면 30일을 기준으로 함
4. 양식용으로 수입하는 활(活)갑각류 및 연체동물은 <붙임 1>과 <붙임 2> 규정에 부합해야 함
   (1) 동물 수출 전 14일 이상 수출국 정부가 감독한 수역이나 양어장에서 양식해야 하고 수역이나 양어장은 지난 3개월 동안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전염병이나 상세불명의 원인으로 대량 사망한 일을 발생하지 않아야 함
   (2) <붙임 1>과 <붙임 2>에 지정한 검역 질병은 수출국 내 법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질병으로 수역이나 양어장은 기초 생물 안전 조치가 적어도 2년 이상 실시 또는 동물 수출 전 30일 내 원래 수역이나 양어장의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실에서 <붙임 1>과 <붙임 2>에 지정한 검역 질병을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타난 것이야 함
   (3) 동물은 수역이나 양어장을 떠난 지 7일 내 건강 상태가 좋은 지 검사해야 하고, 기생충감염이나 어떠한 임상역병(臨床疫病)의 증상이 없어야 함

   상기 제 (2)항의 기초 생물 안전조치는 아래와 같음
   (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실을 통하여 감측(모니터링)하여 연속 2년 이상 <붙임 1>과 <붙임 2>에 지정한 검역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 제출
   (나) 번식용 어묘를 수입할 경우 <붙임 1>과 <붙임 2> 지정한 검역 질병이 없는 청정 구역이거나 기초 생물 안전 조치를 실시한 수역이나 양어장이어야 함
5. 식용으로 제공 시 <붙임 1>과 <붙임 2>에 지정한 수입 검역 실시 활(活)갑각류 및 연체동물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1) <붙임 1>과 <붙임 2>에 지정한 검역 질병은 수출국에서 법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질병으로 수역 또는 양어장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실을 통해 감측(모니터링)하여 연속 2년 이상 <붙임 1>과 <붙임 2>에 지정한 검역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동물 수출 전 30일 내 원래 수역이나 양어장의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실에서 <붙임 1>과 <붙임 2>에 지정한 검역 질병을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타난 것이야 함
6. 활(活)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포장, 운송, 소독 등은 세계동물위생조직의 수생동물보건법에 부합해야 함
7. 제 7조에 정한 상황 외 활(活)갑각류 및 연체동물을 수입하려면 수출국 정부 기관이 제공한 동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제공해야 하고 아래 사항을 영문으로 기록해야 함
   (1) 동물 종류 및 출처
      (가) 동물학명
      (나) 수역이나 양어장 명칭 및 주소
      (다) 연령 또는 생장기
      (라) 수량 및 중량
      (마) 수출국 명칭
      (바) 수출자 및 주소
      (사) 수출국 주관기관 명칭
   (2) 수출 목적지
      (가) 목적지 국가
      (나) 수입자 명칭 및 주소
   (3) 검역결과
      (가) 양식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제 3번에 부합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제3번 규정의 감측된 질병 명칭을 자세히 기록해야 함 혹은 수출 전 30일 내 검사된 질병 명칭, 표본 채취 날짜, 표본 수량, 검측 시험실 명칭, 검측 방법과 결과가 기재되어야 함
      (나) 식용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제 4번 규정에 부합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제4번 규정의 감측된 질병 명칭을 자세히 기록해야 함 혹은 수출 전 30일 내 검사한 질병 명칭, 표본 채취 날짜, 표본 수량, 검측 시험실 명칭, 검측 방법과 결과가 기재되어야 함
   (4)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일자, 위치, 기관 및 그 날인, 발급자 이름 및 서명 날인
8. 중앙어업주관기관의 수생동물 어묘 수입 전문 건이나 실험연구용 수생동물 수입 전문 계획안을 통해 심사 통과한 활(活)갑각류 및 연체동물을 수입 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동물실험검역증명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수출입검역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격리되어야 하고 아래 규정을 부합해야 함

(1) 격리기간은 최소한 <붙임 1>과 <붙임 2>를 지정된 검역질병 중에 잠복기가 가장 긴 것의 3배

(2) 격리기간 내 연속 2번씩 표본 채취 검사를 해야 하고, 그 <붙임 1>과 <붙임 2>에 지정된 검역질병의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야 함

(3) 격리기간 내 수출입동물검역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개체 표시를 해야 함

(4) 격리구역은 격리기간 내 양식되는 수생 동물 및 수출입동물검역기관이 허가한 수생 동물만 진입 할 수 있고 수출입동물검역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양식구역에 진입할 수 없음

상기 지정한 격리 장소는 아래 규정을 부합해야 하고 수출입동물검역기관안 시설, 설비, 운영이 검역 안전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

(1) 외부 척추동물, 갑각류, 연체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고 양식장 내 모든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함

(2) 출입구 CCTV, 인원 출입구에 전자키를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급배수 시스템, 급수 필터 설비, 배수 소독 설비도 갖추어야 함

(3) 양어장을 분리 격리해야 하는 것은 양어장별 효과적으로 격리해야 하고 상호 유통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유통이나 오염된 것은 관련 기구를 공용할 수 없음

제1항 제2호의 표본채취와 검측은 제2번 규정과 아래 규정을 부합해야 함 :

(1) 표본 채취 간격은 최장 잠복기보다 짧으면 안 되고, 매 번 채취한 표본 수량은 최소한 30마리이어야 하고 30마리 미달일 경우 표본 전수 검사를 실시함

(2) 세관을 통관하지 않은 동물을 검측할 경우 그 동물과 수입한 갑각류 및 연체동물은 같은 물에서 최장 잠복기 완료될 때까지 양식하고 그 표본 채취 수량은 채취 당시의 수량보다 낮아서는 안 됨

제1항 제2호 검측 결과 양성으로 판명 시 동일한 물속에서 갑각류와 연체동물은 함께 반송이나 소각됨

<시사점>

- 대만 활(活)갑각류 및 연체류에 대한 수입 검역 조건 수정안 발표를 함에 따라 한국산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대만 수입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안 규정 참고 및 주의가 필요함

* 자료원 : 대만 행정원농업위원회(2018년 7월 30일 공고)

[붙임 1] 활(活)갑각류의 검역 실시 의무 어종 및 그 지정 검역 질병

동물종류의 영문 명칭이나 학명	동물종류의 한글 명칭	지정검역질병
Cambaridae	가재과 모든 새우종	Crayfish plague
		White spot disease
Astacidae	유럽가재과 모든 새우종	Crayfish plague
		White spot disease
Parastacidae	남방가재과 모든 새우종	Crayfish plague
		White spot disease
Caridina spp.	얼룩생이류 모든 새우종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Macrobrachium rosenbergii	대형 담수산새우	White spot disease
		White tail disease
Macrobrachium sintangense	징거미새우	Yellow head disease
		White spot disease
Neocaridina spp.	새뱅이류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Penaeidae	보리새우과 모든 새우종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White spot disease
Fenneropenaeus chinensis	대하 (明蝦)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Farfantepenaeus aztecus	브라운 새우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Farfantepenaeus duorarum	핑크 새우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Fenneropenaeus merguiensis	바나나새우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Litopenaeus schmitti	쉬림프 Litopenaeus schmitti (史密斯對蝦)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Litopenaeus setiferus	인도백새우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Litopenaeus stylirostris	청새우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Litopenaeus vannamei (Penaeus vannamei)	흰다리새우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Infectious myonecrosis
		Acute hepatopancreatic necrosis disease
Metapenaeus ensis	쉬림프 Metapenaeus ensis(沙蝦)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Marsupenaeus japonicus	보리새우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Metapenaeus bennettae	쉬림프 Metapenaeus bennettae (綠尾新對蝦)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Penaeus esculentus	브라운타이거새우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Penaeus monodon	얼룩새우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Taura syndrome
		White spot disease
		Yellow head disease
		Acute hepatopancreatic necrosis disease
Penaeus chinensis	대하(大正蝦)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White spot disease
		Acute hepatopancreatic necrosis disease

[붙임 2] 활(活)연체동물 검역 실시 의무 어종 및 그 지정 검역 질병

동물종류의 영문 명칭이나 학명	동물종류의 한글 명칭	지정검역질병
Haliotis rubra	오스트레일리아 전복	Infection with *Perkinsus olseni* Infection with abalone herpesvirus
Haliotis laevigata	그린 립 전복	Infection with *Perkinsus olseni* Infection with abalone herpesvirus
Haliotis cyclobates	颱風眼 전복	Infection with *Perkinsus olseni*
Haliotis scalaris	계단 전복	Infection with *Perkinsus olseni*
Haliotis cracherodii	검은전복	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
Haliotis sorenseni	흰전복	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
Haliotis rufescens	붉은전복	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
Haliotis corrugata	분홍전복	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
Haliotis tuberculata (동족이명 Haliotis fulgens)	통전복	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
Haliotis wallalensis	평면 전복	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
Haliotis discus-hannai	참전복	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
Haliotis diversicolor aquatilis	오분자기	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 Infection with abalone herpesvirus
Haliotis diversicolor supertexta	오분자기	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 Infection with abalone herpevirus